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제안이유 · 2002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 그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 시의회에서 선임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 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예 산 액</th><th>세입결산액</th><th>세출결산액</th><th>세계잉여금</th></tr> </thead> <tbody> <tr> <td>계</td><td>916,609,850,000</td><td>1,071,230,047,920</td><td>712,586,038,430</td><td>358,644,009,490</td></tr> <tr> <td>일반회계</td><td>620,943,483,000</td><td>718,739,395,080</td><td>514,704,438,860</td><td>204,034,956,220</td></tr> <tr> <td>특별회계</td><td>295,666,367,000</td><td>352,490,652,840</td><td>197,881,599,570</td><td>154,609,053,270</td></tr> </tbody> </table>	구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916,609,850,000	1,071,230,047,920	712,586,038,430	358,644,009,490	일반회계	620,943,483,000	718,739,395,080	514,704,438,860	204,034,956,220	특별회계	295,666,367,000	352,490,652,840	197,881,599,570	154,609,053,270	회계과	각상임위
구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916,609,850,000	1,071,230,047,920	712,586,038,430	358,644,009,490																				
일반회계	620,943,483,000	718,739,395,080	514,704,438,860	204,034,956,220																				
특별회계	295,666,367,000	352,490,652,840	197,881,599,570	154,609,053,270																				
2	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신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 5. 7. 건의안대로 허가하고,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세 정 과	경제통상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3	성남시판교택지 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주요골자 ·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함으로써 조세 감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 제안이유 · 택지개발촉진법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집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의 범위 :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안 제2조) · 세입 :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안 제3조) · 세출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등 제반사업비 및 운영경비 전반(안 제4조) · 세부집행 방안 :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간 협의운영 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안 제5조) · 잉여금 처리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안 제6조) · 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 함 · 이 조례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종료일까지 설치 및 운영(안 부칙)	판교개발 지 원 단	도시건설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4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전면개정('02.11.22)됨에 따라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내용 중 근거법령 및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8호에 의거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단위부담금은 350원으로 조정 (안 제3조3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8호에 의거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내상가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은 면제대상 시설물에 포함(안 제4조3항) ·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쓰레기처리,정수처리,하수종말처리,배수펌프 시설물을 추가로 면제 규정에 포함(안 제4조3항)	교통행정과	도시건설